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21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1] 시도별 학교급별 과밀학급(특수) 현황	9
[참고자료2] 시도별 과밀학급(특수) 비율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20.

3. 회부연월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

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 ----- ----- -----.
1. <u>유치원</u>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1. <u>유치원·초등학교</u> ----- ----- ----- -----.
2. <u>초등학교·중학교</u>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u>중학교·고등학교</u> ----- ----- ----- ----- -----.
3. <u>고등학교</u> 과정의 경우 : 특	<삭 제>

<u>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u>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7조제1항¹⁾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과정, 초등·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별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인원 기준이 정해짐.

구체적으로 현행 규정은 유치원 과정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에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1호).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제2호),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제3호).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개정안은 현행 학급 설치 기준 중 ① ‘초등학교 과정’의 기준을 현행 ‘유치원 과정’과 같은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② ‘고등학교 과정’의 기준을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과밀학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특수교육대상자 수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115,610
학교 과정 별	장애영아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359	407	470
	유치원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8,781	8,746
	초등학교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54,283
	중학교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25,013
	고등학교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22,040
	전공과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5,200	5,058
특수학교 수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195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13,931
교원 수*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27,084

자료: 교육부('24. 1. 기준)

<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현황 >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전체 학급	과밀 학급	비율
15,676	1,610	10.3%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

자료: 교육부

한편, 개정안과 같이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학급 신·증설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바,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설치 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3,143억 5,200만원(연평균 628억 7,000만원)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안 심사 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26~2030년) >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변경 (안 제27조)	1,302.8	409.5	441.8	475.3	514.1	3,143.5	628.7

주: 1) 최근 5년간 초·중·고등 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율을 토대로 추정된 인원수에 24년 기준 과정별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대상자수 비율을 적용
 2) 최근 3년간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6년 기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학급수와 '추계기간동안의 특수교육대상자수로 추정된 인원'에 개정안에 따른 학급설치 비율을 적용하여 도출된 필요 학급수'의 차이를 증개축이 필요한 학급수로 보았음
 3) 2027년 이후에는 연도별 필요 학급수에서 전년도에 설치된 학급수를 뺀 나머지 수만큼 증개축되는 것으로 가정
 4) 학급 증개축 비용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이미 현행법에 따라서도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설치 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나 단순 시·청각장애 학생 등으로 편성된 학급은 현행 수준의 적정 규모 학급에서 사회적 기술 함양 등 보다 나은 교육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행 기준 교원 및 시설 부족 등으로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다수(약 10%) 발생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바, 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시·도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의견

[이견없음]

- (인천) 급별 학생에 따른 학습태도 및 신체변화와 장애 정도가 중증화되고 있는 교육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급별 및 장애정도에 맞는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 (대전) 학생의 장애특성 및 학급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위한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 (충북) 장애 정도가 다양화되고 심화되면서 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 (충남) 중도중복 장애 학생 및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 (전북) 중증장애학생 수 증가로 인한 현실적인 개별화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점르을 감안하여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

[신중검토 및 수정의견]

- (부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 개정에 동의하나 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정원 확대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광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사들의 학생 지도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나, 교사 및 교실 부족 등으로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법 시행 시기를 2029년 이후로 조정하여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기)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으나,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사 및 공간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 (강원) 중도중복 장애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개별화교육에 어려움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학급당 정원 감축 필요에 동의하나, 개별화교육 내실화 및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 세밀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설치 기준 하향 이전에 교사 정원의 수급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검토 필요

문 의 처

02)6788-5186

[참고자료1] 시도별 학교급별 과밀학급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도	학교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소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소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소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소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소계
서울	유	13	18	31	8	13	21	2	31	33	7	30	37	1	30	31
	초	45	212	257	57	172	229	48	71	119	52	71	123	37	89	126
	중	21	70	91	36	77	113	37	33	70	46	47	93	26	81	107
	고	18	45	63	16	27	43	8	0	8	3	9	12	0	9	9
부산	유	1	6	7	6	8	14	6	10	16	2	10	12	2	3	5
	초	9	47	56	12	52	64	19	68	87	22	69	91	19	53	72
	중	2	10	12	12	8	20	16	23	39	21	35	56	19	26	45
	고	3	33	36	3	24	27	4	19	23	6	18	24	6	18	24
대구	유	0	2	2	0	0	0	0	4	4	0	7	7	0	4	4
	초	2	15	17	5	12	17	0	7	7	0	7	7	0	6	6
	중	4	1	5	3	6	9	0	4	4	0	7	7	2	6	8
	고	6	25	31	5	12	17	2	8	10	2	0	2	1	0	1
인천	유	0	0	0	0	1	1	0	2	2	0	0	0	0	0	0
	초	3	78	81	5	50	55	3	60	63	3	150	153	2	120	122
	중	9	28	37	0	37	37	3	33	36	2	64	66	3	55	58
	고	3	9	12	1	5	6	4	6	10	2	37	39	1	16	17
광주	유	0	9	9	0	5	5	0	4	4	0	4	4	1	3	4
	초	0	17	17	0	11	11	0	13	13	0	8	8	0	3	3
	중	0	3	3	1	0	1	0	5	5	1	2	3	2	5	7
	고	1	0	1	0	0	0	0	0	0	0	8	8	0	3	3
대전	유	0	15	15	0	8	8	1	11	12	2	11	13	2	5	7
	초	3	17	20	0	14	14	1	39	40	1	37	38	1	28	29
	중	4	6	10	3	4	7	1	14	15	1	10	11	2	8	10
	고	6	12	18	4	11	15	4	16	20	2	9	11	1	13	14
울산	유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초	0	2	2	0	1	1	0	0	0	0	0	0	0	0	0
	중	0	5	5	0	0	0	0	0	0	0	0	0	0	0	0
	고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 도	학 교 급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세 종	유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초	0	0	0	0	0	0	0	0	0	0	2	2	1	7	8
	중	0	0	0	0	0	0	0	0	0	0	0	0	0	6	6
	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경 기	유	5	12	17	4	16	20	5	21	26	3	10	13	3	19	22
	초	6	204	210	7	168	175	7	243	250	8	285	293	9	350	359
	중	7	46	53	10	45	55	6	52	58	13	73	86	13	135	148
	고	2	47	49	0	94	94	0	66	66	3	90	93	4	114	118
강 원	유	0	6	6	0	10	10	2	11	13	0	12	12	2	14	16
	초	0	29	29	2	23	25	1	24	25	3	23	26	0	24	24
	중	0	5	5	0	13	13	2	14	16	1	15	16	3	17	20
	고	0	14	14	0	8	8	0	5	5	0	9	9	1	11	12
충 북	유	1	11	12	0	13	13	3	21	24	0	36	36	0	27	27
	초	0	14	14	0	13	13	0	16	16	1	35	36	2	18	20
	중	0	10	10	4	9	13	4	10	14	12	11	23	5	18	23
	고	0	8	8	0	9	9	4	8	12	1	3	4	0	0	0
충 남	유	0	19	19	0	4	4	0	18	18	0	14	14	0	6	6
	초	0	47	47	0	49	49	0	42	42	0	28	28	0	13	13
	중	0	10	10	0	12	12	0	14	14	0	8	8	0	22	22
	고	0	10	10	0	8	8	0	5	5	0	6	6	0	3	3
전 북	유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초	1	3	4	1	1	2	0	1	1	1	2	3	3	9	12
	중	3	0	3	2	2	4	0	2	2	1	1	2	3	3	6
	고	1	1	2	0	0	0	0	0	0	0	1	1	1	3	4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 도	학 교 급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특 수 학 교	특 수 학 급	소 계
전 남	유	1	1	2	2	5	7	1	7	8	0	5	5	0	6	6
	초	5	11	16	8	4	12	6	1	7	0	0	0	6	12	18
	중	11	3	14	9	2	11	14	0	14	0	8	8	10	10	20
	고	18	3	21	10	1	11	2	0	2	0	2	2	4	9	13
경 북	유	1	3	4	0	4	4	0	10	10	0	7	7	0	9	9
	초	0	24	24	0	23	23	0	42	42	0	41	41	0	34	34
	중	2	11	13	2	15	17	0	14	14	0	18	18	0	25	25
	고	1	12	13	0	15	15	0	10	10	2	5	7	1	5	6
경 남	유	0	7	7	0	15	15	0	13	13	0	4	4	0	2	2
	초	0	61	61	0	45	45	0	43	43	1	36	37	1	43	44
	중	0	14	14	0	15	15	1	13	14	0	16	16	0	29	29
	고	1	16	17	0	9	9	0	16	16	0	13	13	0	17	17
제 주	유	1	3	4	0	7	7	0	8	8	0	8	8	0	8	8
	초	0	24	24	0	29	29	0	33	33	0	41	41	2	45	47
	중	0	10	10	0	7	7	0	10	10	1	10	11	0	7	7
	고	0	5	5	0	7	7	0	8	8	0	11	11	1	12	13

[참고자료2] 시도별 과밀학급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도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서울	2,070	442	21.4%	2,115	406	19.2%	2,176	230	10.6%	2,236	265	11.9%	2,279	273	12.0%
부산	895	111	12.4%	908	125	13.8%	937	165	17.6%	962	183	19.0%	1,002	146	14.6%
대구	691	55	8.0%	728	43	5.9%	748	25	3.3%	754	23	3.1%	783	19	2.4%
인천	946	130	13.7%	992	99	10.0%	1,055	111	10.5%	1,094	258	23.6%	1,138	197	17.3%
광주	466	30	6.4%	482	17	3.5%	492	22	4.5%	523	23	4.4%	557	17	3.1%
대전	496	63	12.7%	521	44	8.4%	534	87	16.3%	542	73	13.5%	557	60	10.8%
울산	414	8	1.9%	430	1	0.2%	438	0	0.0%	469	0	0.0%	476	1	0.2%
세종	146	0	0.0%	157	0	0.0%	179	0	0.0%	193	2	1.0%	207	16	7.7%
경기	3,809	329	8.6%	3,945	344	8.7%	4,187	400	9.6%	4,379	485	11.1%	4,591	647	14.1%
강원	531	54	10.2%	534	56	10.5%	553	59	10.7%	571	63	11.0%	588	72	12.2%
충북	699	44	6.3%	726	48	6.6%	782	66	8.4%	818	99	12.1%	873	70	8.0%
충남	886	86	9.7%	921	73	7.9%	987	79	8.0%	1,051	56	5.3%	1,104	44	4.0%
전북	623	9	1.4%	644	6	0.9%	663	3	0.5%	689	7	1.0%	751	22	2.9%
전남	769	53	6.9%	792	41	5.2%	841	31	3.7%	912	15	1.6%	953	57	6.0%
경북	866	54	6.2%	882	59	6.7%	906	76	8.4%	936	73	7.8%	981	74	7.5%
경남	1,147	99	8.6%	1,195	84	7.0%	1,283	86	6.7%	1,373	70	5.1%	1,436	92	6.4%
제주	222	43	19.4%	239	50	20.9%	240	59	24.6%	257	71	27.6%	276	75	27.2%
합계	15,676	1,610	10.3%	16,211	1,496	9.2%	17,001	1,499	8.8%	17,759	1,766	9.9%	18,552	1,882	10.1%